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0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 한정애·박홍배·박해철

송옥주 · 김주영 · 정성호

강훈식 • 부승찬 • 장철민

서영교 · 김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 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음.

그런데 공단이 재해 현장에서 원인조사 시 경찰이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통제하거나 관련 자료열람을 허락하지 않아 조사에 한 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중대재해 원인 조사 시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의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,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6조제1항, 제56조의2, 제165조제3항 및 제17

5조제3항제1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단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
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6조의2(특별사고조사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한 사고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(이하 "특별사고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사고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원회(이 하 "특별사고조사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특별사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사고조사를 거부 ·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특별사고조사의 방법·절차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조의2에 따른 특별사고조사 및 특별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7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사고조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대재해 원인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5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하고 있는 중대재해 원인조사에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제56조(중대재해 원인조사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 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 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공단으 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56조의2(특별사고조사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고 또 는 복합적인 원인조사가 필요 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인 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(이하 "특 별사고조사"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사고 조사를 위하여 특별사고조사위 원회(이하 "특별사고조사위원 회"라 한다)를 구성・운영할 제16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·② (생 략) <신 설>

③ (생 략)

제175조(과태료) ①・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(생략)

수 있다.

- ③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 동부장관이 특별사고조사를 실 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사 고조사를 거부・방해하거나 기 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특별사고조사의 방법·절차 및 특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165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

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6조의 2에 따른 특별사고조사 및 특 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 영에 관한 업무를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175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(3)	

1. (현행과 같음)

<u><신 설></u>	1의2. 제56조의2제3항을 위반하
	여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사
	고조사를 거부・방해하거나
	<u>기피한 자</u>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